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알림(보고)

1. 완도/청산 항로 운영 선시(청산농협)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에 대하여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보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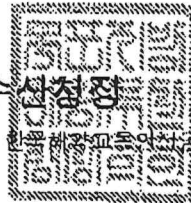
항로명	선사명	선명	신고 내용	시행일
완도/청산	청산농협 협동조합	청산아일랜드, 슬로시티청산도, 권청산(예)	운임인상 (여객 평균 9.9%, 치량 평균 9.7%)	'26.10.5.

2. 여객선시 및 한국해운조합에서는 변경신고한 운임·요금이 전산매표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임·요금 신고 대조표 1부.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수신자 청산농협협동조합장, 해양수산부장관(연안해운 과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완도 지부장



주부관 강준구 주무관 홍석원 과장 신철 2026. 9. 21.
김희상

협조자

시책 선원해사안전과-11123 (2026. 9. 21.) 접수

우 58746 전남광주광역시광역시 목포시 통일대로 130, 선원해사안전과 / <http://mokpo.mof.go.kr>

전화번호 061-280-1642 팩스번호 061-280-1655 / wnsrn306@korea.kr / 비공개(5)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조표

운항거리 및 운임표

- 항 로 : 완도/청산
- 선 명 : 정산아일랜드호, 슬로시티정산도호, 쿤청산호

범 례	거리(Km)	
	일반인(원)	
	도서민(원)	

- ※ 부가세 포함
- ※ 기타비용 별도(터미널 이용료)

정산	완도
	20.4km
	7,600
	6,000

운임 및 요금의 신규 대조표

○ 선 명 : 정산아일랜드호, 슬로시티청산도호, 쿤청산호

(단위 : 원)

운항구간	현행 운임	신고 운임	조정운임	인상액	인상율	비고
완도-청산 (일반대인)	7,000	8,400	7,600	600	8.6%	
완도-청산 (도서대인)	5,400	6,500	6,000	600	11.1%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

○ 할증운임

(단위 : %)

대 상	할 증 요 율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0%
특별수송기간 (설날, 추석, 하계)	10%
유류할증료	「별첨」 유류할증 기준표

○ 할인운임

(단위 : %)

대 상	할 인 요 율
유아 (만 2세 미만)	무임
일반단체 (20명 이상), 학생(중,고등학생)	10%
중,고등학교 단체 (20명 이상)	20%
경로대상자 (만 65세 이상)	20%
소아 (2세이상 12세미만 여객과 초등학생)	50%
1~3급 중증 장애인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50%
4~6급 경증 장애인, 군인(군복착용사병)	20%
국가유공자 1~5급	무임
국가유공자 6급이하	50%

차량운임표(화물검용여객선)

○ 항 로 : 완도/청산

○ 선 명 : 청산아일랜드호, 슬로시티정산도호, 권정산호

(단위 : 원)

차종		현행운임	신고운임	조정운임	인상액	인상율	비고
승용	경승용차	18,000		20,000	2,000	11.1	
	소형승용차	20,000		22,000	2,000	10.0	
	중형승용차	22,000		24,000	2,000	9.1	
	RV차량(20초과)	22,000		24,000	2,000	9.1	
승합	경형 승합차	18,000		20,000	2,000	11.1	
	9인승 이하	22,000		24,000	2,000	9.1	
	12인승 이하	24,000		26,000	2,000	8.3	
	15인승 이하	26,000		29,000	3,000	11.5	
	25인승 이하	60,000		66,000	6,000	10.0	
버스	일반버스	106,000		116,000	10,000	9.4	
	관광버스	106,000		116,000	10,000	9.4	
중장비	포크레인 02,03	53,000		58,000	5,000	9.4	
	포크레인 04,05	94,000		103,000	9,000	9.6	
	포크레인 06,07	134,000		148,000	14,000	10.4	
	포크레인 08,09	200,000		219,000	19,000	9.5	
화물차	경형화물차	18,000		19,000	1,000	5.6	
	1톤	20,000		22,000	2,000	10.0	
	1.4톤	22,000		24,000	2,000	9.1	
	2.5톤	30,000		33,000	3,000	10.0	
	3.5톤	37,000		41,000	4,000	10.8	
	4.5톤	45,000		50,000	5,000	11.1	
	4.5톤 장축	55,000		61,000	6,000	10.9	
	8톤	80,000		88,000	8,000	10.0	
	9톤~9.5톤	85,000		94,000	9,000	10.6	
	11톤	94,000		104,000	10,000	10.6	

	15톤	105,000		116,000	11,000	10.5	
	18톤	120,000		132,000	12,000	10.0	
	25톤	140,000		156,000	16,000	11.4	
기타	레미콘(15톤)	105,000		116,000	11,000	10.5	
덤 프	15톤	105,000		116,000	11,000	10.5	
	18톤	120,000		132,000	12,000	10.0	
	25톤	140,000		156,000	16,000	11.4	
농 기 계	트랙터	18,000		20,000	2,000	11.1	
	콤바인	18,000		19,000	1,000	5.6	
	이앙기	10,000		11,000	1,000	10.0	
	경운기	18,000		19,000	1,000	5.6	
오토 바이	125cc 이하	10,000		11,000	1,000	10.0	
	125cc 초과	15,000		16,000	1,000	6.7	

별첨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표 2

유류할증료 기준표 [제13조제3항제2호마목 관련]

부과 단계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유류할증률
	이상	미만	
1단계	740원	770원	1.5%
2단계	770원	800원	3.0%
3단계	800원	840원	4.5%
4단계	840원	880원	6.0%
5단계	880원	920원	7.5%
6단계	920원	960원	9.0%
7단계	960원	1,000원	10.5%
8단계	1,000원	1,050원	12.0%
9단계	1,050원	1,100원	13.5%
10단계	1,100원	1,150원	15.0%
11단계	1,150원	1,200원	16.5%
12단계	1,200원		18.0%

비고

1. 유류할증료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경유(0.05%MGO)가격(가중 수수료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산식) 여객 1인당 유류할증료 ≤ 성인 정액 운임 × 유류할증률
2. 보조항로 운항선박 및 도서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여객운송사업자는 유류할증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한국해운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